P 3 위생 공간

(1) 설치 위치 145

(2)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 147

(3) 모두를 위한 화장실 149

(4)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159

계획원칙

공원에는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위생 공간이 설치되어야 하고, 이해하기 쉬운 이용안내가 필요하다.

(1) 설치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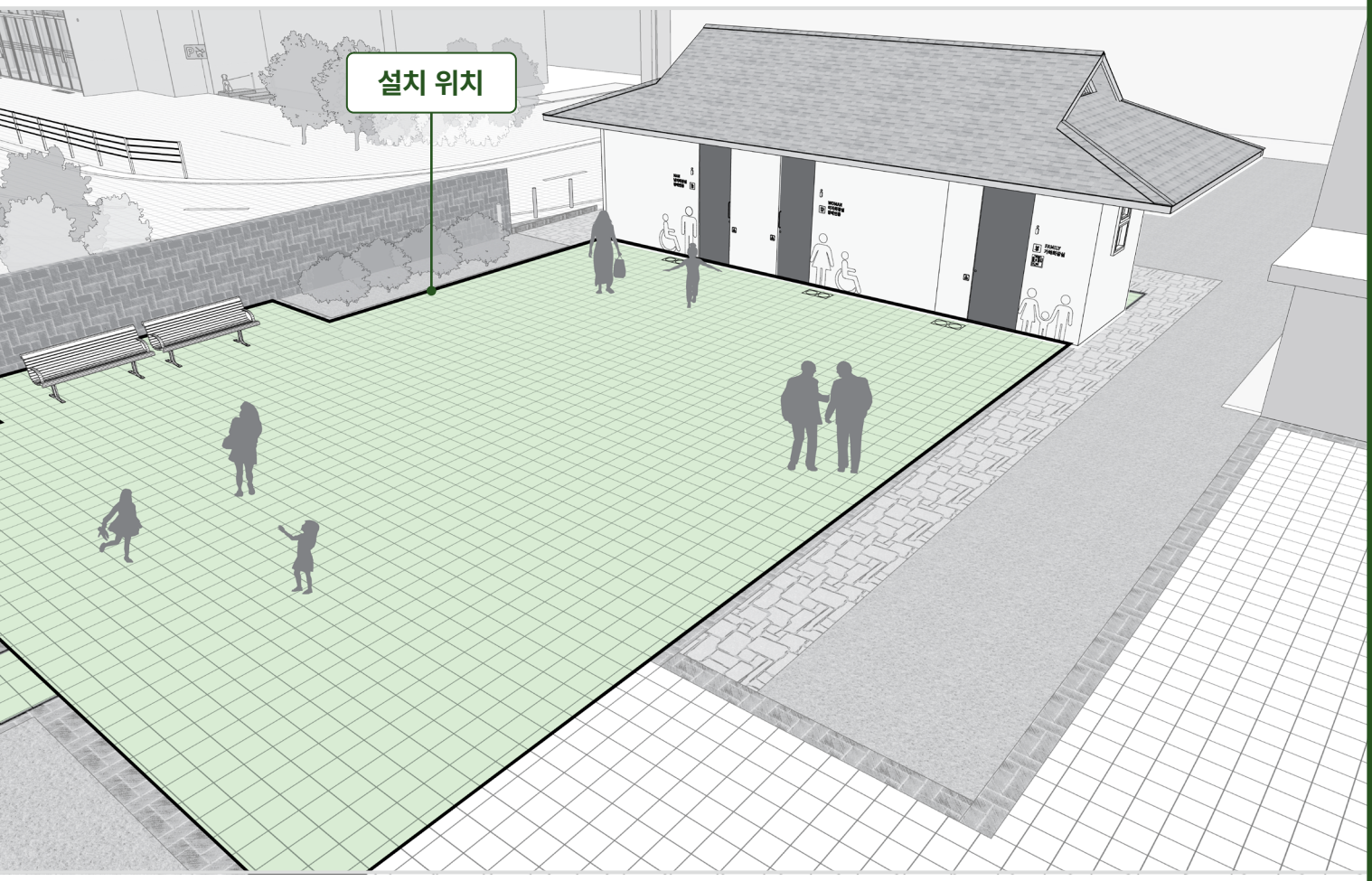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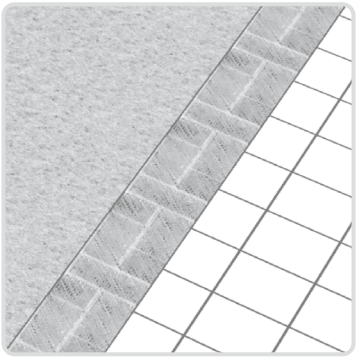

설치 위치

공원 내 화장실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배치한다.

- 접근 가능한 주요 보도와 연결되도록 설치하고, 공원 주출입구, 기타 주요 교차점에 방향·위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.

※ 공원·광장 화장실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은 「무장애 친화공원 지침」 pp.63~66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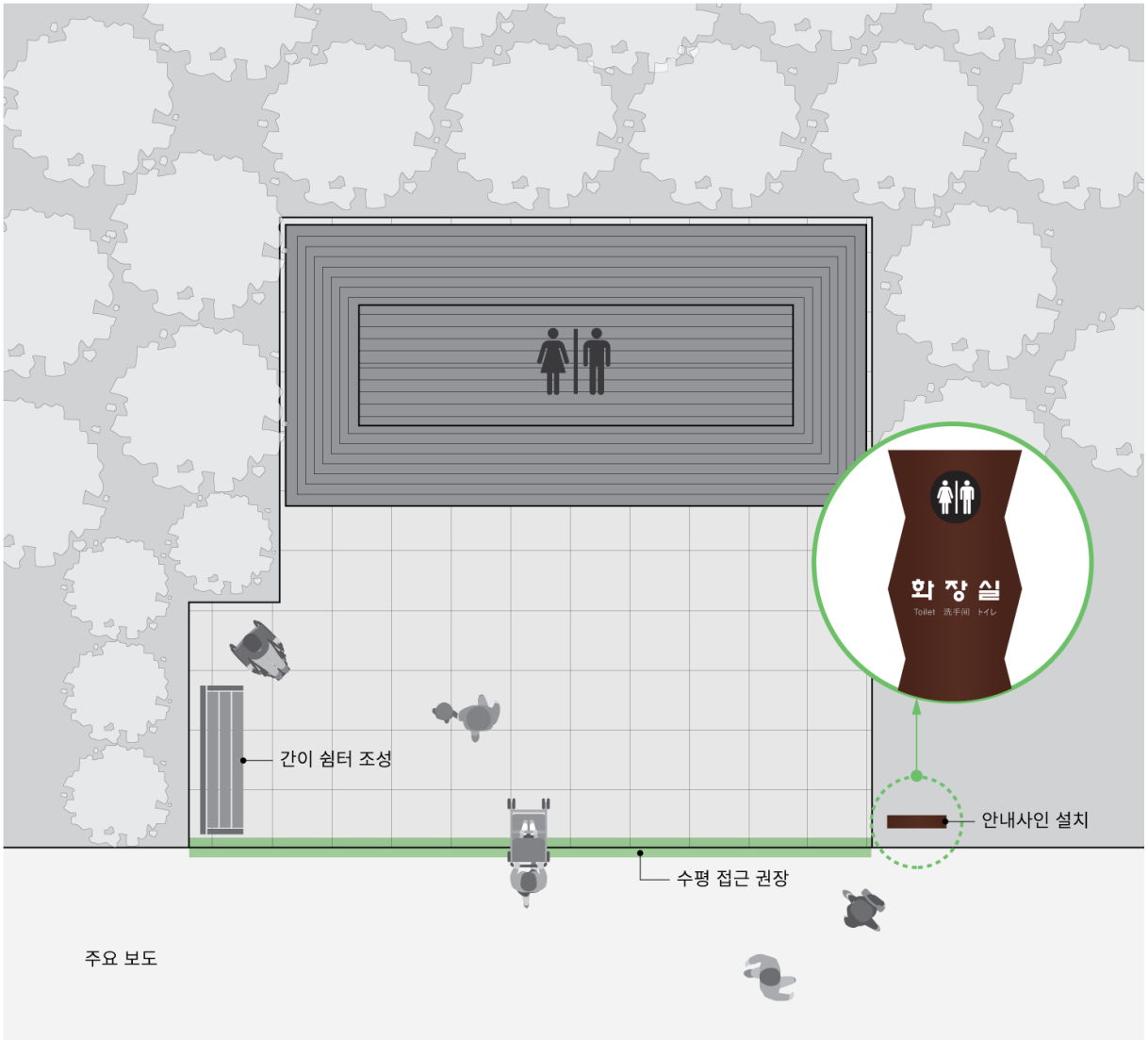

(2) 화장실 출입구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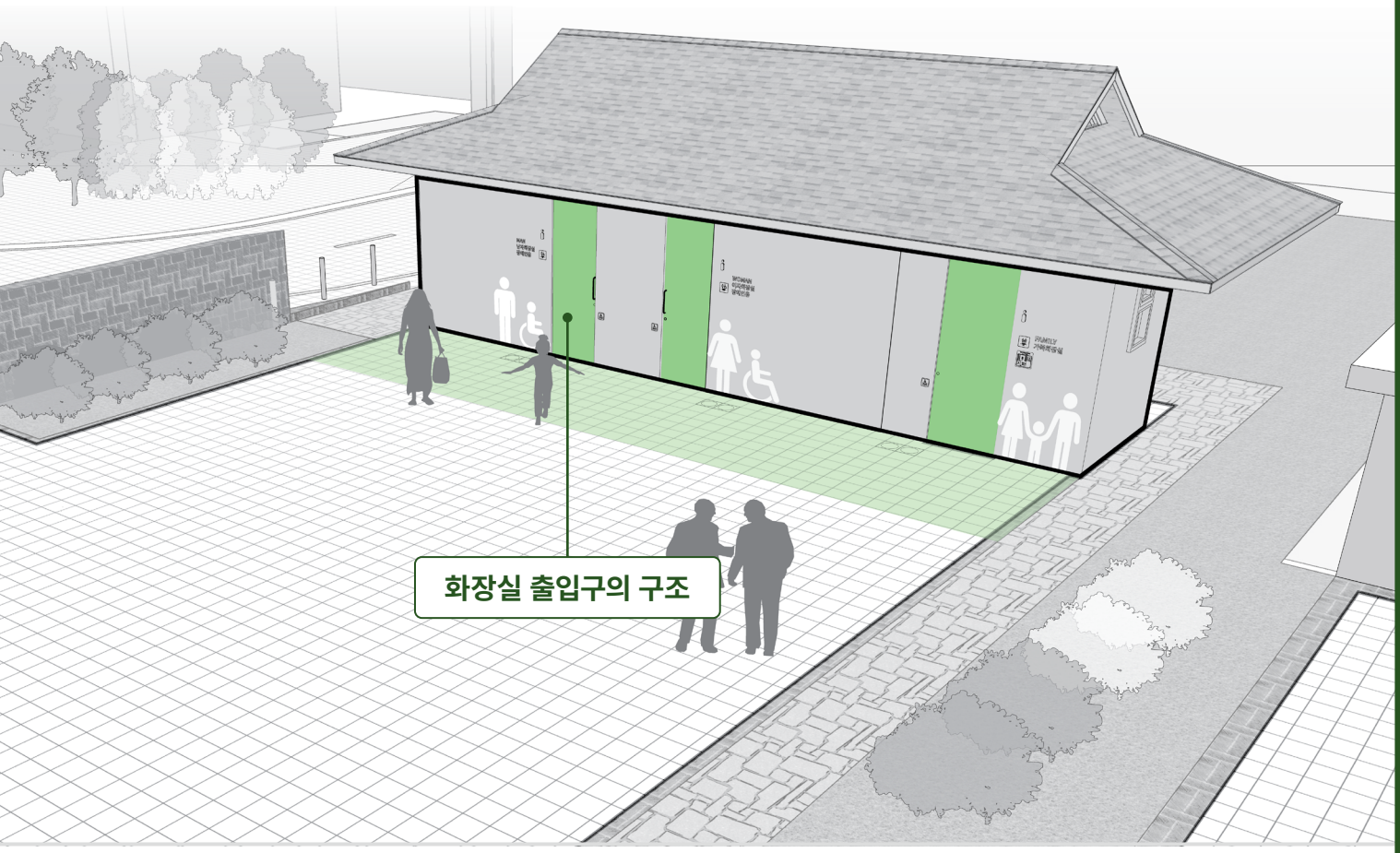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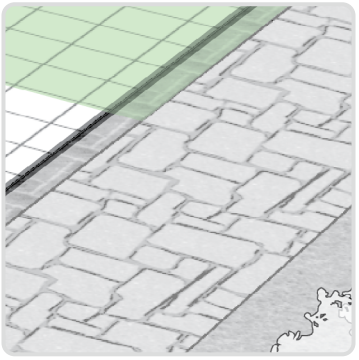

화장실 출입구의 구조

공원 내 화장실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스스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확보하며, 충분한 출입 공간을 확보한다.

- 출입구는 주요 보도에서 1/24 이하 기울기로 수평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- 출입문의 유효폭은 0.9m 이상 확보하며, 출입문을 열고 닫는데 필요한 날개벽 공간은 0.6m 이상 확보한다. (단, 출입구만 있고, 별도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날개벽 공간 기준은 예외로 한다.)
- 출입구(문)의 전후면 수평 활동공간은 1.2m 이상을 확보한다. 이때 수평 활동공간은 출입문 개폐에 필요한 소요 공간을 제외한 순수 활동공간을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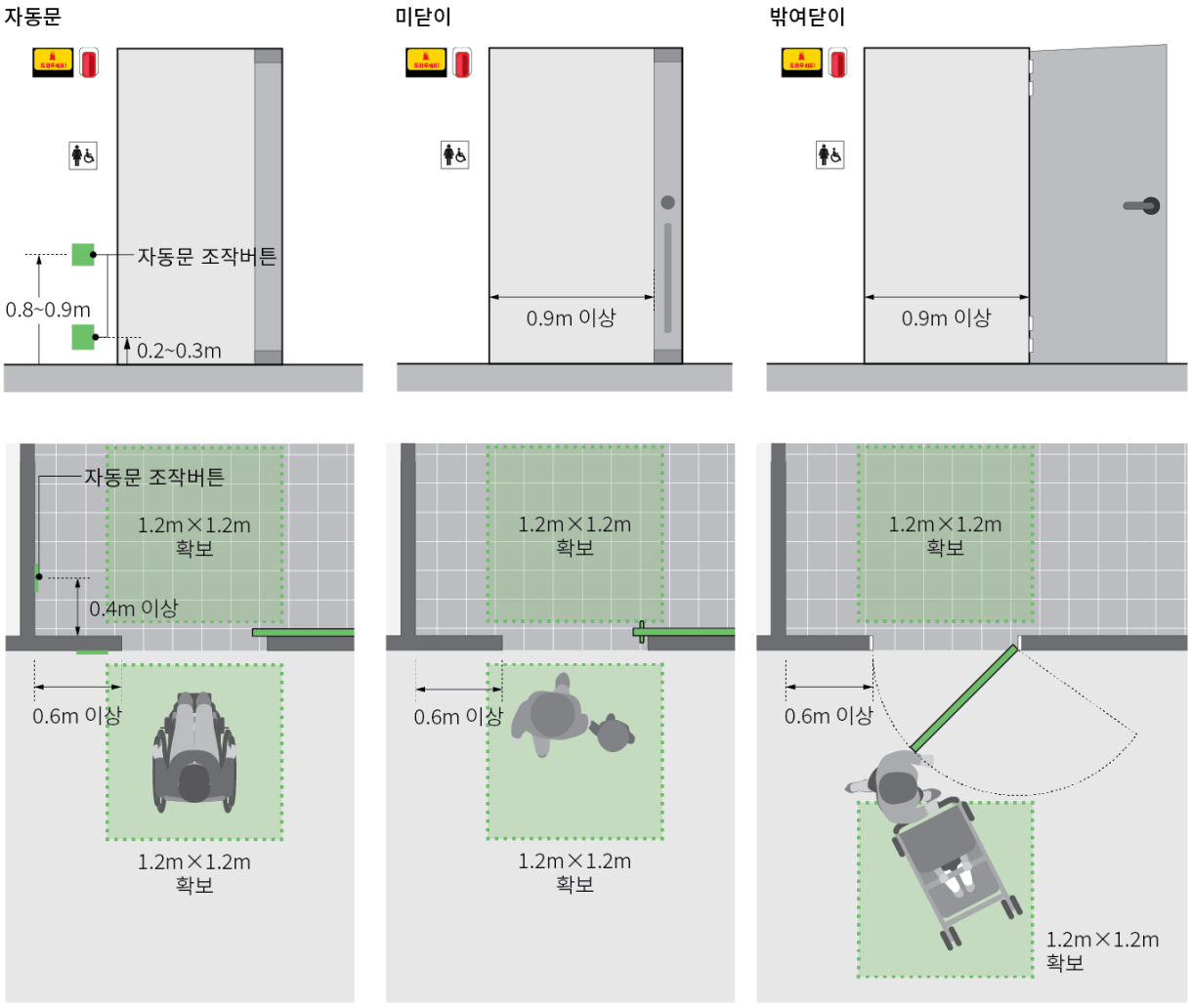

(3) 모두를 위한 화장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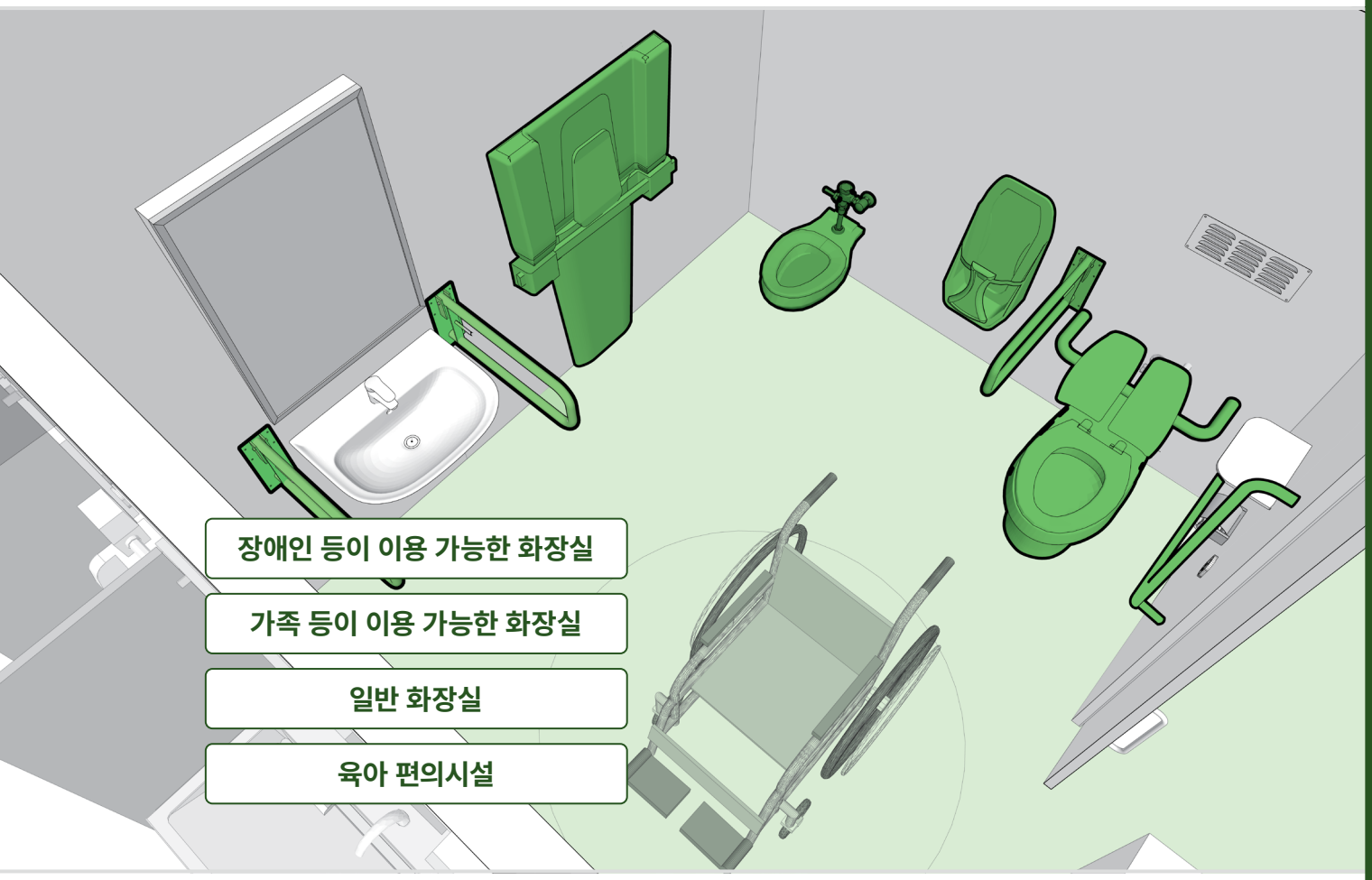

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

공원 내 주요 경로에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.

-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.
  -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일반 화장실과 구분하여 별도로 설치 시 내부 유효 크기 2m × 2.1m 이상을 확보하며, 일반 화장실 내부에 설치 할 때에는 1.6m × 2.0m 이상을 확보
  -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하고, 내부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을 확보
  -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(보조 손잡이, 대변기 등받이, 세정장치, 비상호출 장치 등)를 설치
  - 내부에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 설치 및 적절한 수신반 설치
  - 장애인 이용 가능에 대한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
  -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, 습도, 환기 성능을 유지

일반화장실 내 설치 시

2019.9.27. 이후 준공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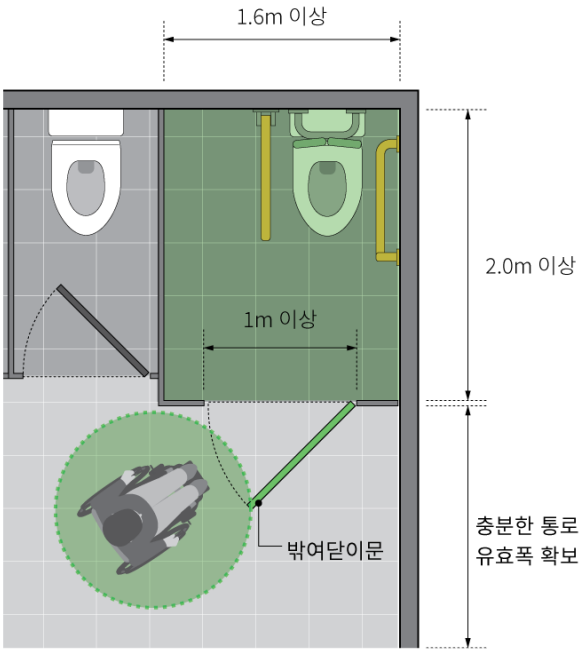

2019.9.27. 이전 준공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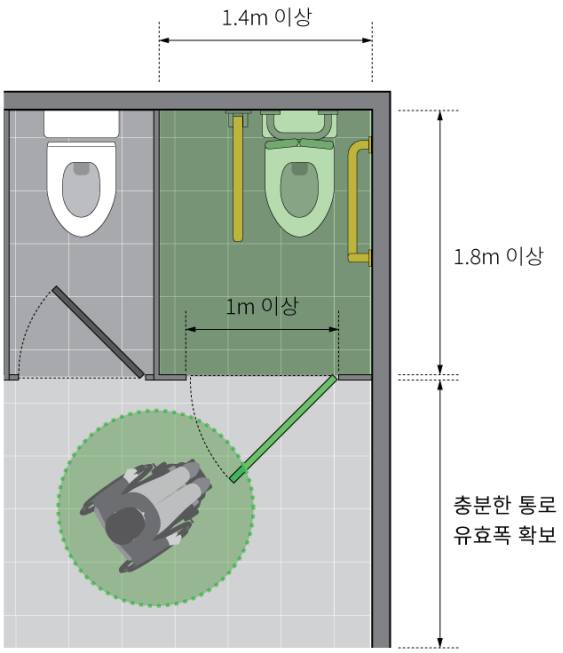

별도 설치 시

장애인용 화장실 평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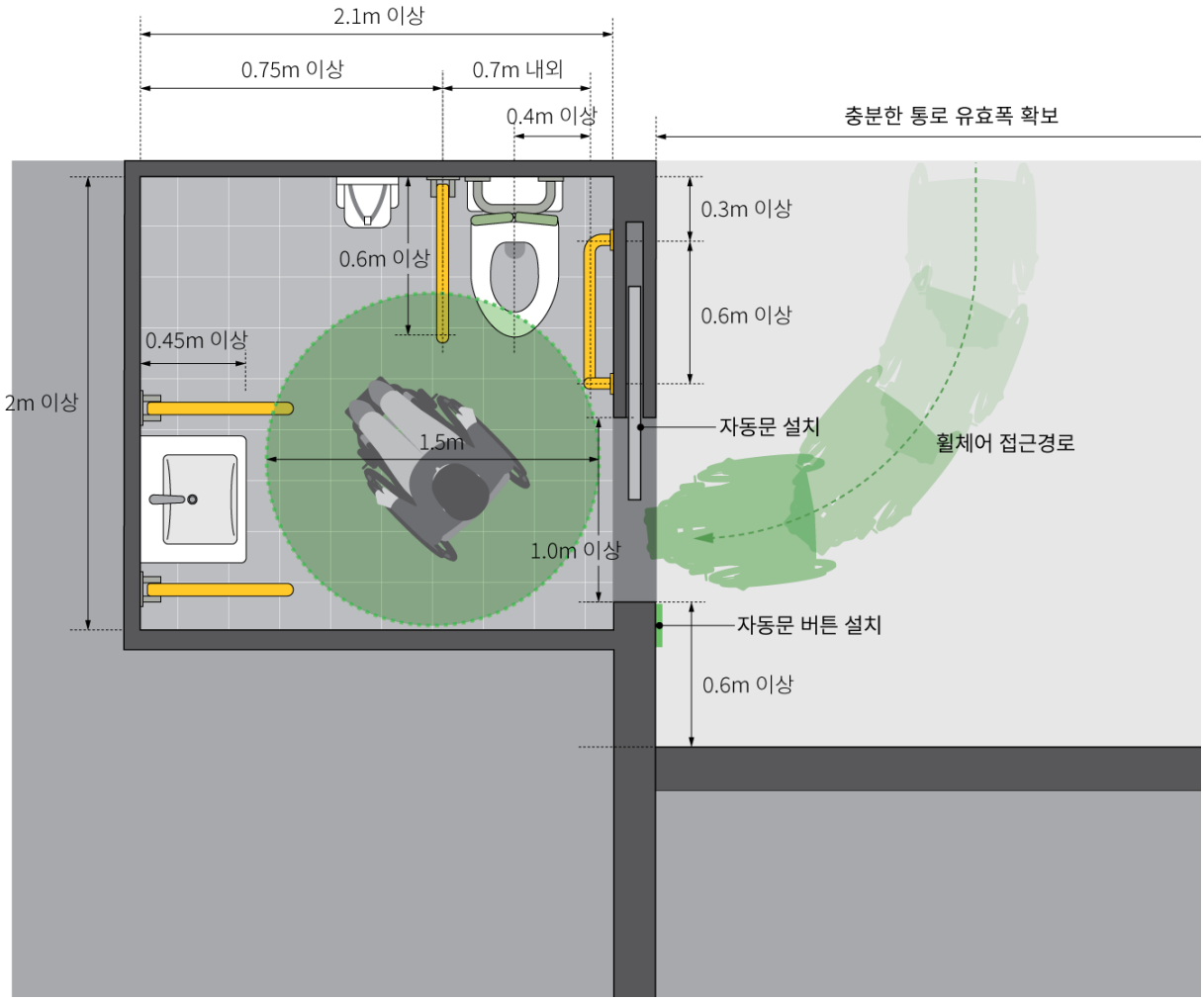

대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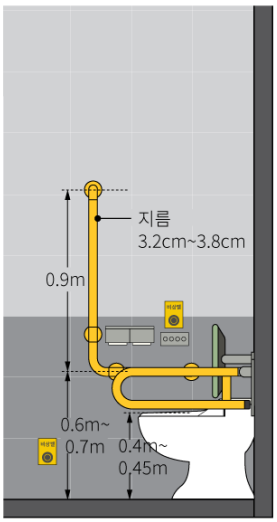

세면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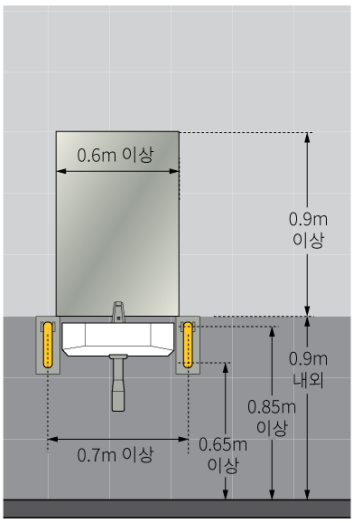

소변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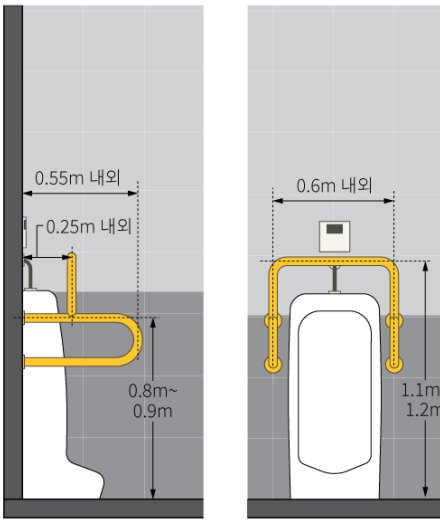

가족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기준

공원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 외에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별도로 1개소 이상 공원의 주 이용시설 인근 화장실에 설치한다.

- 가족 등 이성 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.
  - 화장실 내부 유효 크기 2m × 2.1m 이상을 확보
  - 내부에는 휠체어, 유아차 등의 활동공간을 확보
  - 남녀 일반 화장실과 다른 별도의 출입구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
  - 노인, 어린이, 영유아 동반자 등을 배려한 시설 설치(간이 샤워, 기저귀 교환대, 유아시트, 보조 손잡이, 어린이용 위생설비 등)
  - 가족 이용 등 다목적에 대한 적절한 안내시설 설치
  -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, 습도, 환기 성능을 유지

최소 규격 설치 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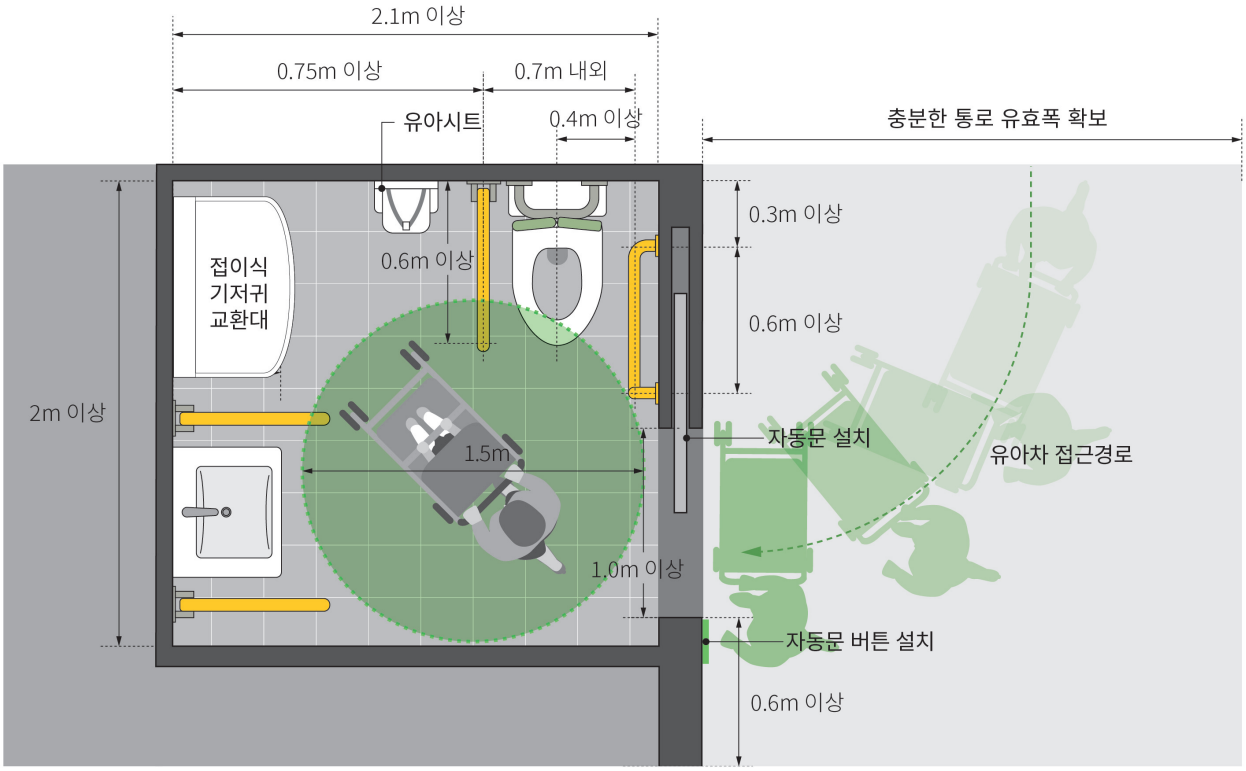

확장 규격 설치 시(권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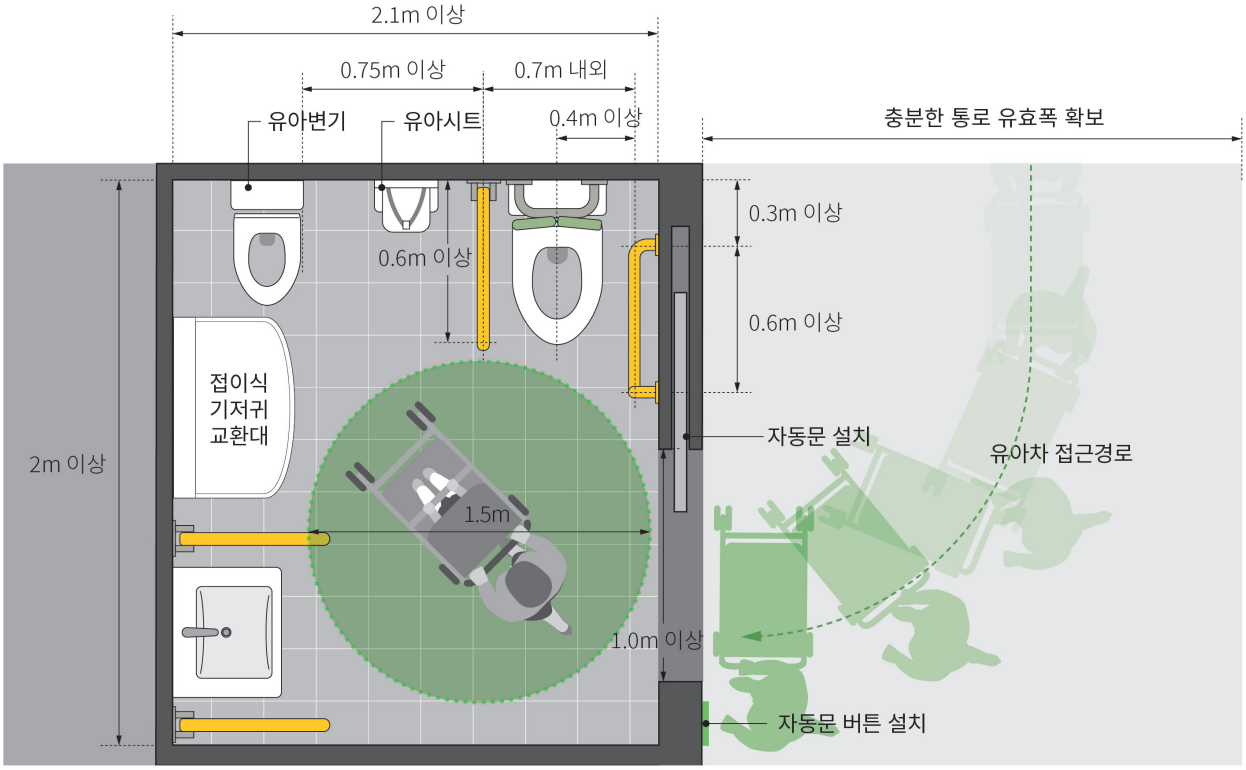

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

일반 화장실은 시각장애인, 고령자, 어린이 및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.

화장실의 구조

- 휠체어 사용자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출입구와 출입문을 설치한다.
- 시각장애인 및 지팡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설비(소변기, 세면대, 보조 손잡이 등)를 설치한다.
- 휠체어 사용자 등도 함께 이용 가능한 세면대로 설치한다.
- 남녀 구분하여 설치 및 비상호출 장치, 시각 및 청각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.

일반화장실 세면대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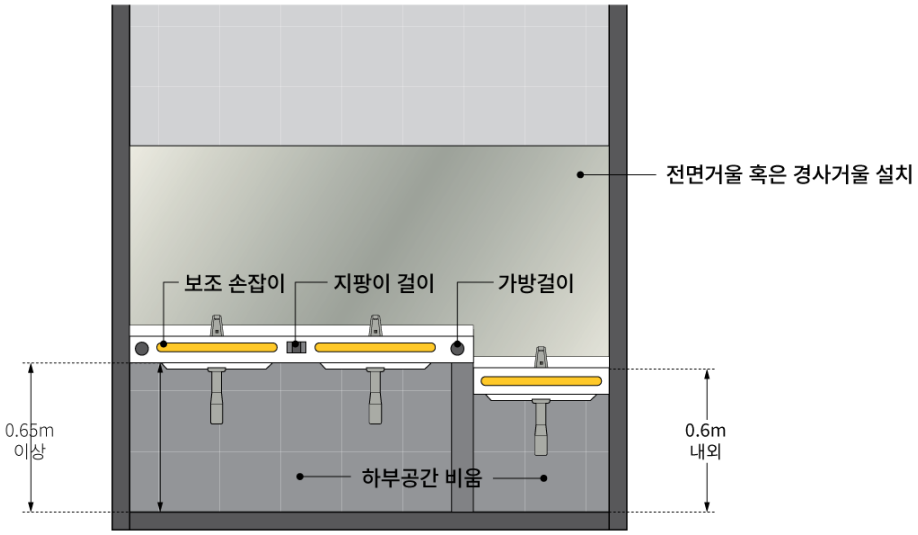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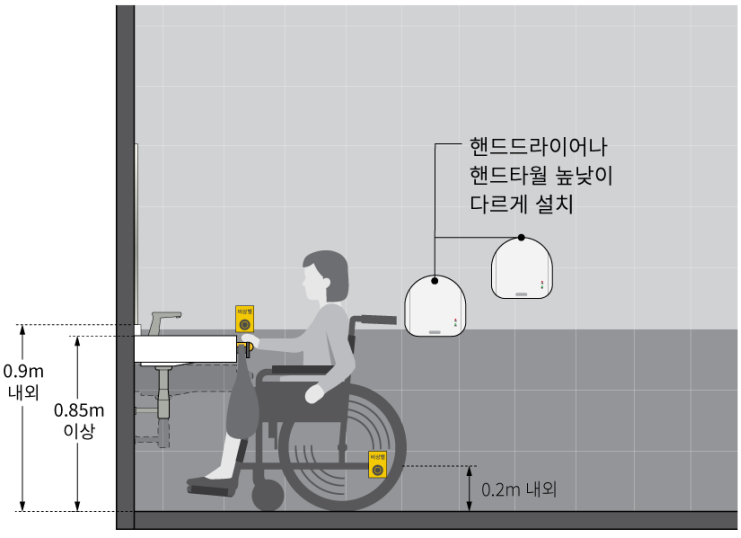

일반화장실 대변기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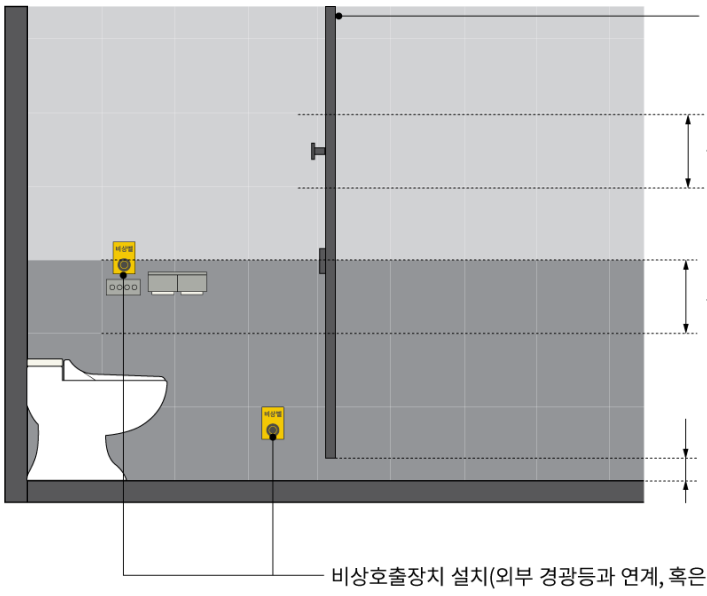

잠금장치 및 사용중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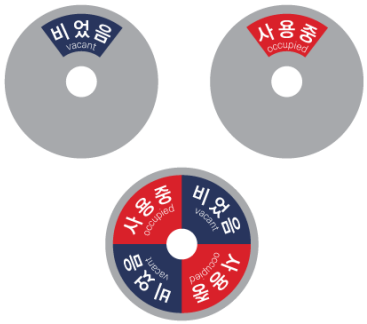

사용중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주어야 하며,
색상 및 문자(다국어 포함)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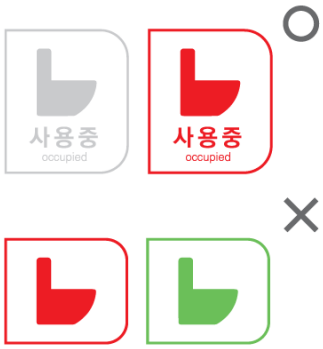

조명으로 나타낼때도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여, 사용중일 때는 불이
켜지는 방식으로 유도하며, 픽토그램 및 문자(다국어 포함)를 병행 설치

일반화장실 소변기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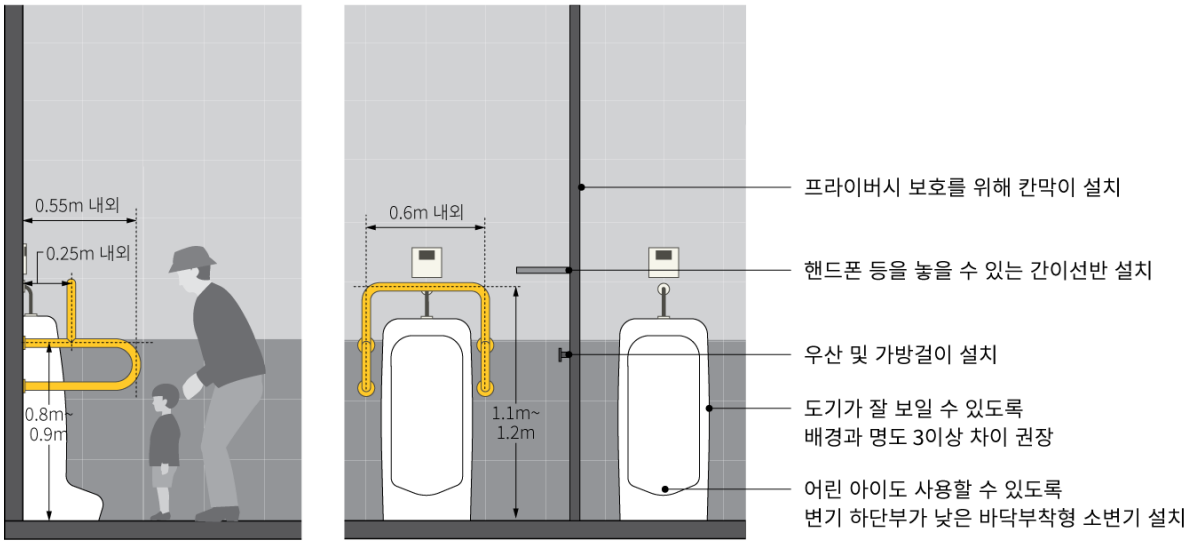

어린이 등 영유아 배려시설 설치 기준

- 어린이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 어린이용 세면대와 소변기를 설치한다.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 소변기의 하단 높이를 바닥에서 0.35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.
- 어린이 등을 배려하여 대변기, 소변기, 세면대(거울 포함)를 남녀 각각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다.
- 위의 시설물이 별도의 '모두를 위한 화장실'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.

어린이 대변기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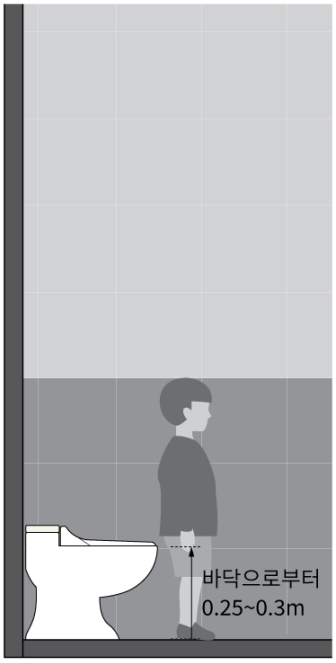

어린이 소변기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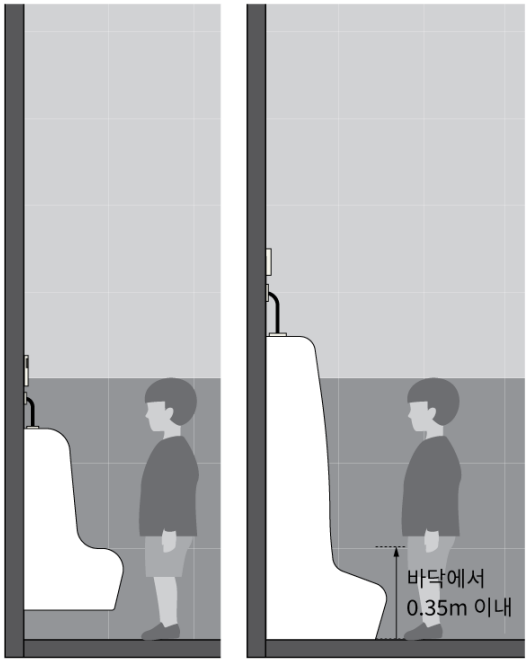

어린이 세면대의 구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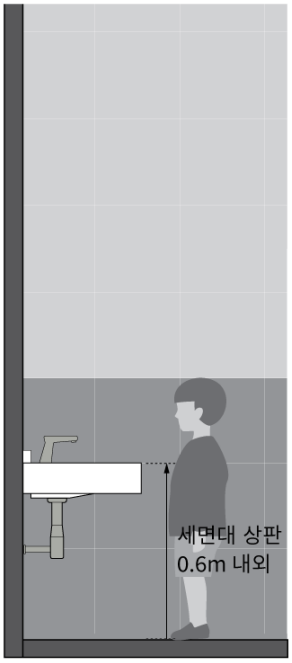

다기능 일반 화장실 설치 기준

- 대변기 부스 면적 폭 1m 이상, 깊이 1.8m 이상, 출입문 폭 0.9m 이상을 확보한다.
- 대변기 부스 내 보조 손잡이, 간이 선반, 옷걸이 등을 설치한다.
- 그 외 '일반 화장실' 설치 기준을 만족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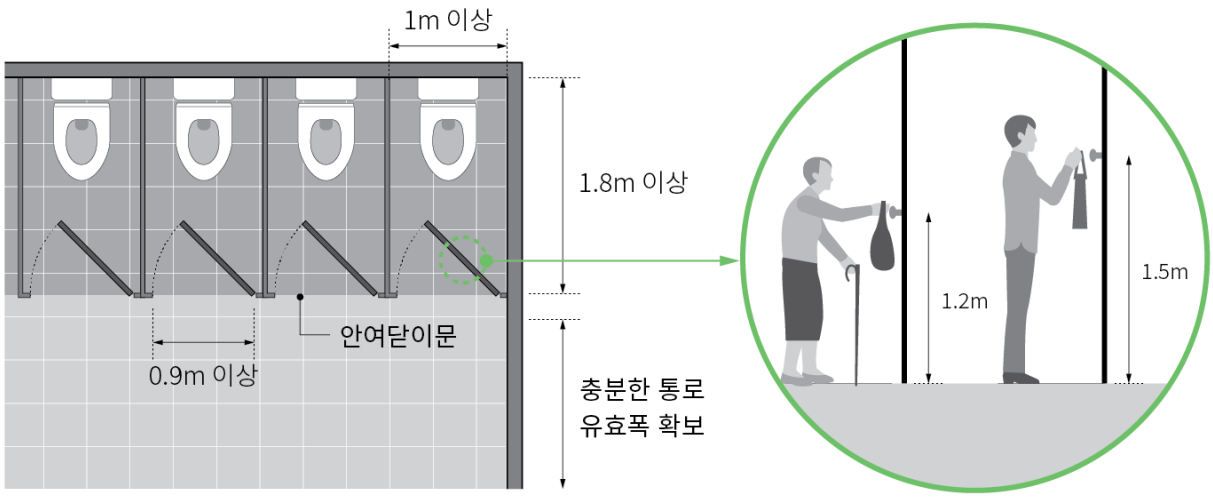

인근 화장실 안내

- 공원 내 위생시설이 미설치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이용 가능한 위생시설에 대한 안내시설을 공원 입구 종합안내시설에 설치한다.
- 해당 내용에 대해 점자 또는 음성 등으로 시각장애인용 안내를 제공한다.

육아편의시설 설치 기준

남녀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, 유아시트 등의 육아편의시설을 설치한다.

- 남녀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.
- 남녀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, 세면대 인근 유아시트를 각 1개소 이상 설치한다.
- 위 시설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.

일반화장실 내 육아편의시설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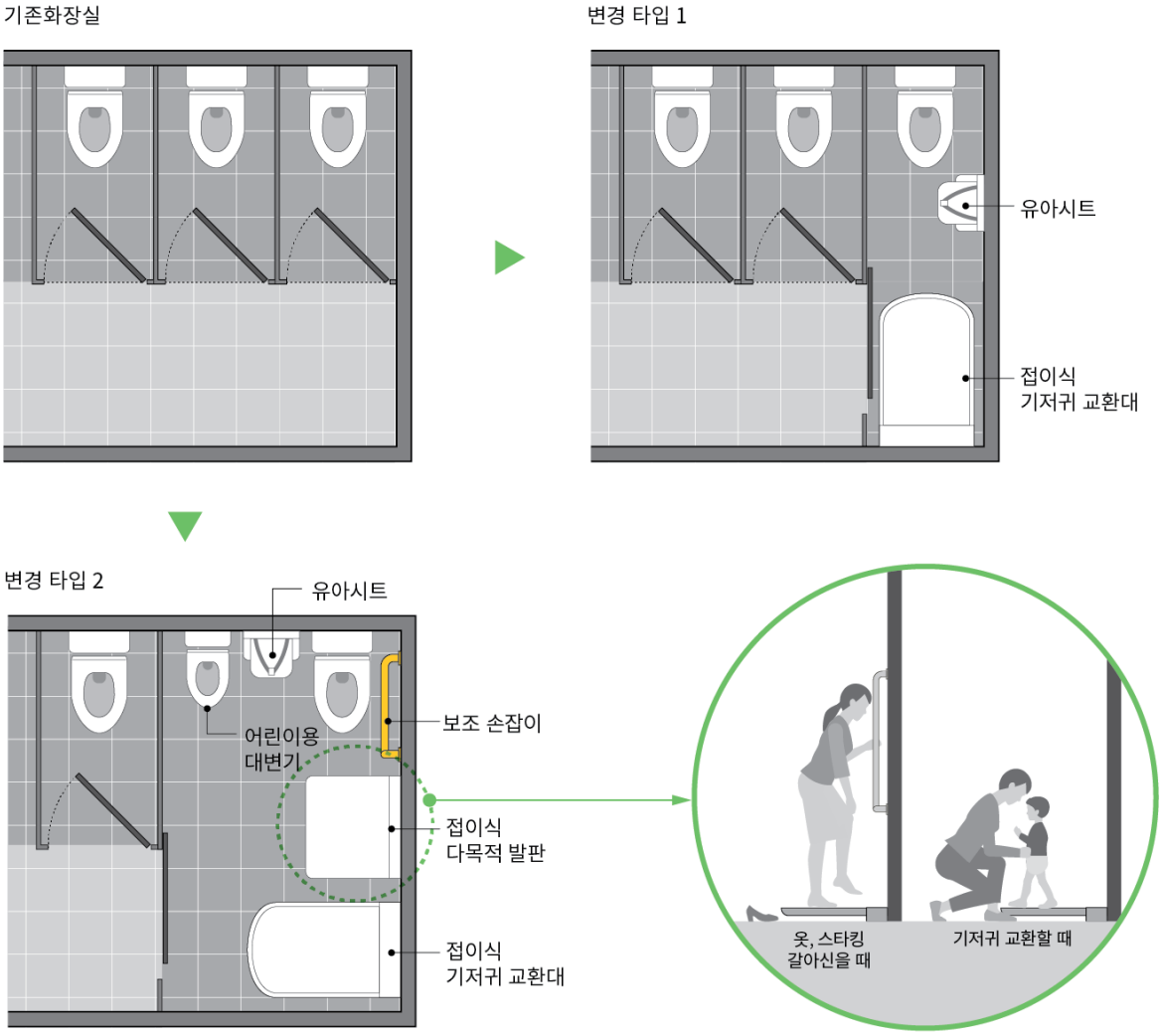

(4)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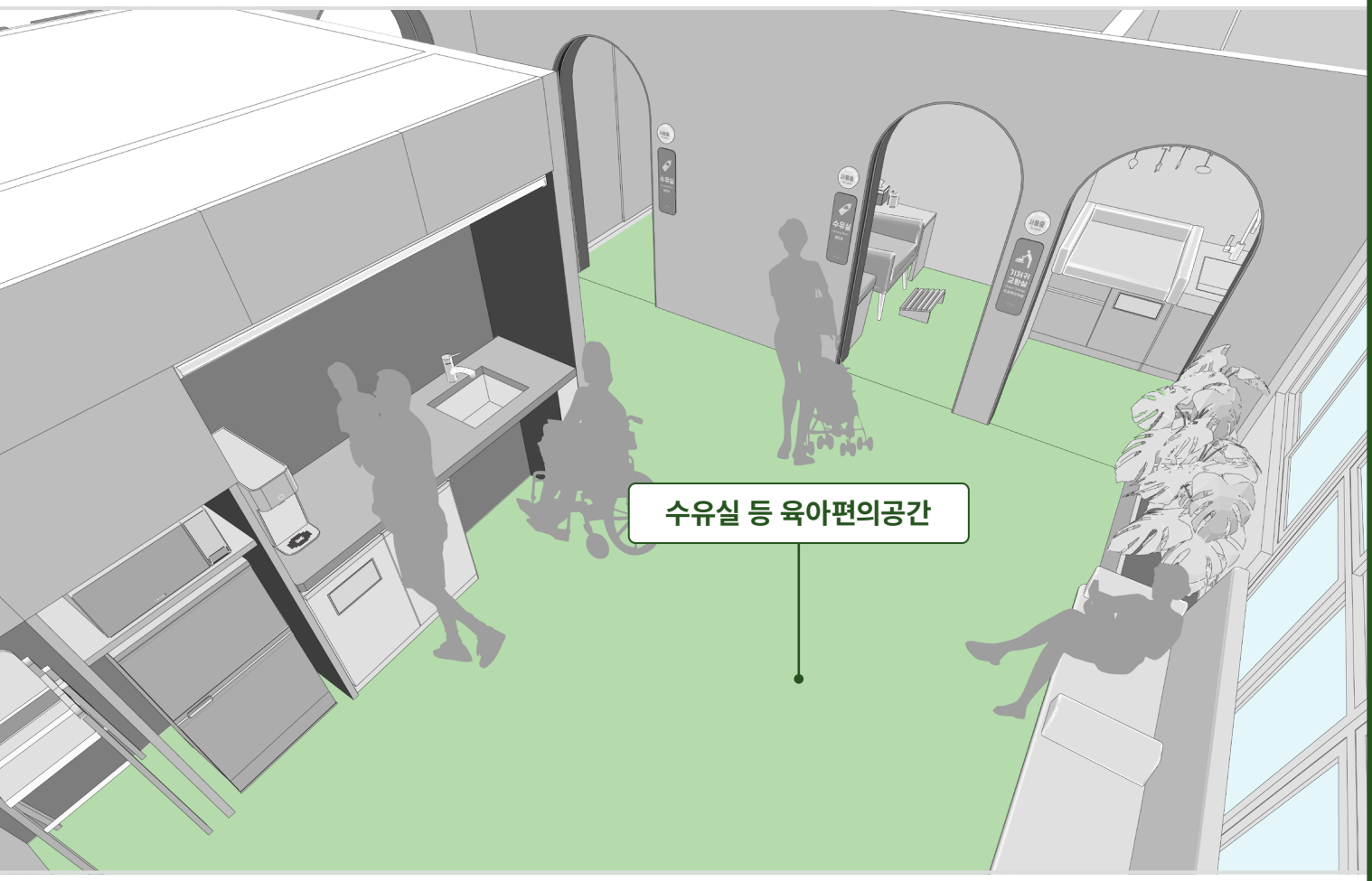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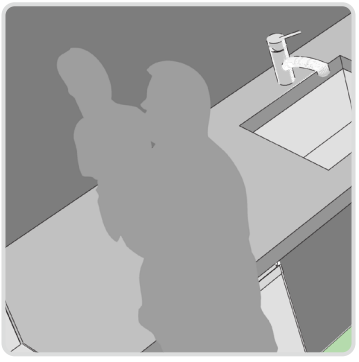

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

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규모 공원의 경우,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수유실 등의
육아 편의공간을 설치하며,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 및 이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.

- 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한다.
  - 유아차,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하고 통과 가능한 출입문 설치
  - 내부에 1대 이상의 유아차 및 휠체어 활동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
  - 출입문 주변 유아차 대기공간 확보 및 수유실에 대한 적절한 유도·안내시설 설치
  - 수유 공간은 칸막이로 구분하여 프라이버시 보장과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
  - 의자, 소파, 기저귀 교환대, 아기침대, 유아시트, 세면대(온수 기능 확보), 휴지통 등 구비
  - 상시 쾌적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, 습도, 환기 성능을 유지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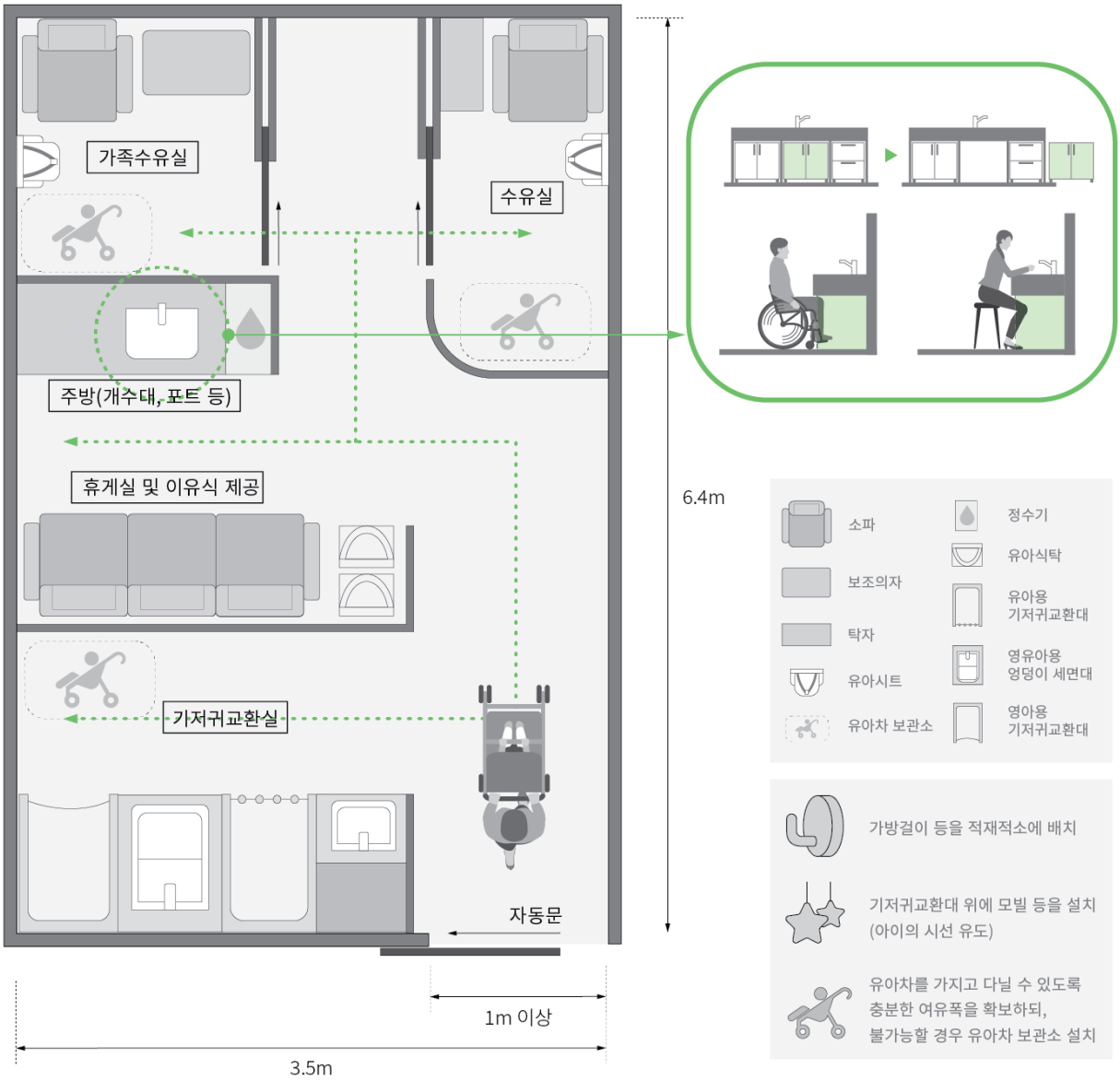
수유실 등 육아편의공간 예시